

**2020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결정(1차)**

**2020. 3.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 감정평가기관 평가·산정

- 토지·물건 등 대부분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 어업권 등 권리,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

### □ 사업시행자 직접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통적용 단가 산출이 가능한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4종의 보상액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을 직접산정

#### <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 방법 >

보상대상	산정 방법	비고
- 이사비*	통계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임 및 차량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	시행규칙 제55조
- 분묘보상액	전북 및 광주·전남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출한 '20 분묘이전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시행규칙 제42조
- 주거이전비*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시행규칙 제54조
- 영농손실액*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시행규칙 제48조

- 직접산정 4종의 보상액 중 분묘보상액은 발표자료가 완비되어 금회산정하되, 이사비·주거이전비·영농손실액은 관계기관의 발표자료가 완비되는 4~5월경 산정

\* 이사비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가 4월경에 발표되며, 주거이전비, 영농손실액은 가계조사통계 산출단가 및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가 5월경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

□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보상 기준

- 연고자가 있는 분묘(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은 분묘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에 대한 보상은 유연 분묘이전비(운구차량비·잡비 제외)의 50%에 운구차량비를 가산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 \* 분묘이전비 : 4분관 1매(10,000원), 마포 24m(241,000원) 및 전지 5권(19,000원), 제레비(395,000원), 노임 5인분(911,500원) 및 운구차량비(386,500원)
- \* 잡비 : 분묘이전비(제레비용과 운구차량비 산정액의 30%)
- \* 이전보조비 : 100만원

- \* 분묘이전비 구성요소별 단가는 한국감정협회 광주전남, 전북지회 평가기준에 의함 (운구차량비는 유연분묘는 전세버스 1회, 무연분묘는 2.5톤화물차 1일 8시간 기준 적용)

□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분묘이전비①		잡비 (①× 30%)	이전보조비	합계	
	분관 제레비	마포 전지 노임				운구차량비
유연	단장	1,576,500	386,500	588,900	1,000,000	3,551,900
	합장	2,364,750	386,500	825,375	1,000,000	4,576,620
	아장	630,600	386,500	305,130	1,000,000	2,322,230
	3합장	2,995,350	386,500	1,014,555	1,000,000	5,396,400
	4합장	3,468,300	386,500	1,156,440	1,000,000	6,011,240
	5합장	3,783,600	386,500	1,251,030	1,000,000	6,421,130
	6합장	3,941,250	386,500	1,298,325	1,000,000	6,626,070
무연	단장	788,250	103,000	267,375	-	1,158,620
	합장	1,182,375	103,000	385,613	-	1,670,980

- \* 합장은 단장 분묘이전비에 50% 가산(운구차량비 제외)되며 아장 및 3합장이상은 감정평가협회 분묘 평가지침 비율 적용
- \* 무연은 유연 분묘이전비(운구차량비 제외)의 50% 적용

- 적용대상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
- 적용시기 : 2020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21년도 보상단가 결정시 까지

\* 본 단가결정 이전 산정 시에 누락된 경우의 보상금 산정은 2020년 보상기준 적용